

제15주. 인가자원 활용의 전망

1. 여성근로자의 실태
2. 여성활용을 위한 정부정책
3. 고령자 현황
4. 고령자 대책
5.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6. 외국인 근로자의 대책

1. 여성근로자의 실태

- ▶▷ 정보화 사회에서 우수한 지적 능력의 근로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여성의 지적 역량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 ▶▷ 여성의 지적 기반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음에도 사회참여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 지식기반시대에는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지적 능력자를 활용하는 사회체제가 중요하다. 차별적 관행으로 여성의 지적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도 저하되며, 향상된 역량이 정상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경우 여성들은 각종 시민 운동 등을 통해 세력화하는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중점을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여성활용을 위한 정부정책

(1) 300인 이상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

-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인 직장은 보육시설을 설치 해야 하며, 보육인원 20명 이하인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이 아닌 주택가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기혼녀 퇴직강요는 처벌

-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했다고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형사입건 되는 등 여성차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 모성보호는 국가경쟁력

- 서비스와 지식산업의 발전은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고, 고도 지식사회에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단기적 안목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 시각에서 모성보호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3. 고령자 현황

-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7%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 중고령자는 단순노무인력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일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 기업 내 중고령 근로자 과잉고용문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내부 노동시장 구조와 인사관리 관행을 감안할 때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4. 고령자 대책

(1) 고령자 불이익 관행금지

- 고령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금지를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준고령자, 고령자의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없으며, 기업의 정리해고 등 인력구조 조정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2) 고령자 기준고용률 현황

(3) 고령인 고용사업주에 장려금

-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체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이다.

(4) 중고령자 고용회피와 중고령자의 대처



5.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211,988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이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 ▶▷ 고용기간은 1년 단위로서 최대 3년까지로 하고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퇴직 적립금제도를 두도록 하였다.
- ▶▷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출국할 경우 극심한 산업인력부족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고 체류시한을 늦추면서 단계적으로 출국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되면 특별법을 통해 사면을 검토 중이다.



6. 외국인 근로자의 대책

(1) 인권침해업체 지원 제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정부가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2) 응급의료 지원

- 법무부는 3D업종에 종사해 산재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외국인 체류자격요건 완화

- 이로 인해 산업연수생의 편법적 활용을 근절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향상될 것이며, 인도적 배려가 요구되는 자와 전문인력 및 숙련기능 인력에 대해 안정적인 국내체류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